

##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0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# 제안이유
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·공포됨에 따라 동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시행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가.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기준을 현행 1만제곱미터당 15호에서 10호로 완화함 (안 제11조).
- 나. 시장이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(안 제27조제3항 신설).
- 다.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불법토지형질변경토지의 경우 원상복구 및 시장의 확인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도록 하였던 규정 중 5년 경과 부분을 삭제함 (안 제 27조제1항제9호).
- 라.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을 현행 100퍼센트에서 자연녹지지역과 같은 80 퍼센트로 조정함 (안 제39조).
- 마.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동주택 재건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의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적정 용적율·층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(안 제28조제3항 신설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○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별첨

○ 입법예고 : 2001. 10. 24. ~ 2001. 11. 15.(20일간)

○ 의견청취결과 : 별첨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#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중 “15호”를 “10호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9호 단서규정 중 “시장의 확인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”를 “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”로 한다.

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허가하고자 할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건축물의 건축중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도시의 기능·미관 및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·용적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39조제1항제15호중 “100퍼센트”를 “80퍼센트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도시 계획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도시계획과장 이 성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도시계획담당 윤 순동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동옥 (행정 2378)

#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<p>제11조 【취락지구의 지정 및 기준】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1만제곱미터당 <u>15호</u> 이상으로 한다.</p> <p>제27조 【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】</p> <p>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· 수질오염 · 토질오염 · 소음 · 진동 ·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등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건교부고시 제99-374('99.12.4)호 이후의 불법 토지형질변경 토지(다만, 산림의 원상복구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상 복구를 하여 <u>시장의 확인을 받고 5년 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</u>)</p> <p>②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11조 【취락지구의 지정 및 기준】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10호 -----</p> <p>제27조 【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】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</u>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허가하고자 할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.</u></p>

## 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
<p>제28조 【건축물의 건축】</p> <p>① ~ ② (생 략)  <u>〈신설〉</u></p>	<p>제28조 【건축물의 건축】</p> <p>① ~ ② (현행과같음)</p> <p><u>③건축물의 건축중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도시의 기능·미관 및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·용적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39조 【지역안에서의용적율】 ①법 제55조 제1항 및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 하로 한다.</p> <p>1. ~ 14. (생 략)</p> <p>15. 생산녹지지역 : <u>100퍼센트</u></p> <p>16. ~ 17. (생 략)</p> <p>② ~ ③ (생 략)</p>	<p>제39조 【지역안에서의용적율】 ①—————  —————  —————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생산녹지지역 : <u>80퍼센트</u></p> <p>16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안산시도시계획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1009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1. 12. 20.  
제 안 자 : 도시·건설위원장

## □ 수정 이유

- 재건축사업을 안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## □ 주요 골자

- 개정조례안에 신설된 제28조 제3항을 삭제함.(안 제28조)

##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#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28조(건축물의 건축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건축물의 건축중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도시의 기능·미관 및 암호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총수·용적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28조(건축물의 건축)</p> <p>①~②(원안과 같음)</p> <p>〈삭제〉</p>